

투자위험등급 : 3 등급
[중간 위험]

마이다스에셋자산운용(주)는 투자대상 자산의 종류 및 위험도 등을 감안하여 1 등급(매우 높은 위험)에서 5 등급(매우 낮은 위험)까지 투자위험등급을 5 단계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분류기준에 따른 투자회사의 위험등급에 대해 충분히 검토하신 후 합리적인 투자판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 투자설명서는 마이다스 절대수익안정형 증권 투자회사(채권혼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마이다스 절대수익안정형 증권 투자회사(채권혼합) 주식을 매입하기 전에 반드시 이 투자설명서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 집합투자기구 명칭 : 마이다스 절대수익안정형 증권 투자회사(채권혼합)
2. 집합투자업자 명칭 : 마이다스에셋자산운용주식회사
3. 판매회사 : 각 판매회사 본·지점(판매회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협회(www.kofia.or.kr) 및 집합투자업자(www.midasasset.com)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작성 기준일 : 2010년 4월 20일
5. 증권신고서 효력발생일 : 2010년 5월 14일
6. 모집(매출) 증권의 종류 및 수 : 투자회사 주권
[모집(매출) 총액 : 9,999 조원]
7. 모집(매출) 기간(판매기간) : 일괄신고서를 제출하는 추가형(개방형) 증권투자 회사로 모집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고 계속 모집이 가능합니다.
8. 집합투자증권신고서 및 투자설명서의 열람장소
 - 가. 집합투자증권신고서
전자문서 : 금융위(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 → <http://dart.fss.or.kr>
 - 나. 투자설명서
전자문서 : 금융위(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 → <http://dart.fss.or.kr>
서면문서 : 집합투자업자 → <http://www.midasasset.com>
각 판매회사, 협회 → <http://www.kofia.or.kr>

※ 효력발생일까지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 중 일부가 변경될 수 있으며, 개방형 집합투자증권인 경우 효력발생일 이후(청약일 이후)에도 변경될 수 있습니다.

금융위원회가 투자설명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그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하지 아니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집합투자증권은 「예금자보호법」에 의한 보호를 받지 않는 실적배당상품으로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투자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결정시 유의사항

1. 투자판단시 증권신고서와 투자설명서를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이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등급 및 적합한 투자자유형에 대한 기재사항을 참고하고, 귀하의 투자경력이나 투자성향에 적합한 상품인지 신중한 투자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3. 증권신고서, 투자설명서상 기재된 투자전략에 따른 투자목적 또는 성과목표는 반드시 실현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4. 과거의 투자실적이 미래에도 실현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5. 판매회사는 투자실적과 무관하며, 특히 은행, 증권, 보험 등의 판매회사는 단순히 집합투자증권의 판매업무(환매 등 판매행위와 관련된 부가적인 업무포함)만 수행할 뿐 판매회사가 동 집합투자증권의 가치결정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6. 집합투자증권은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에 따라 손익이 결정되는 실적배당상품으로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며, 특히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 등에서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는 경우에도 은행예금과 달리 예금자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7. 투자자가 부담하는 선취수수료 등을 감안하면 투자자의 입금금액중 실제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는 금액은 작아질 수 있습니다.
8. 이 증권신고서(투자설명서)는 효력발생일까지 기재사항 중 일부가 변경될 수 있으며, 개방형 집합투자증권인 경우 효력발생일 이후에도 변경될 수 있습니다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집합투자기구 명칭(종류명 명칭)	펀드 코드
마이더스 절대수익안정형 증권 투자회사(채권혼합)	39386

2.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

가. 형태별 종류 : 투자회사

나. 운용자산별 종류 : 증권(혼합채권형)

다. 개방형·폐쇄형 구분 : 개방형(환매가 가능한 집합투자기구)

라. 추가형·단위형 구분 : 추가형(추가로 자금 납입이 가능한 집합투자기구)

마. 특수형태 : 해당사항 없음

주1)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에도 불구하고 투자대상은 여러가지 다양한 자산에 투자될 수 있으며, 자세한 투자대상은 제2부의 내용 중 “투자대상” 과 “투자전략”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모집예정금액 :

이 투자신탁은 1조원(액면금액 기준)까지 모집(판매) 가능하며 1주 단위로 모집합니다. 다만 모집(판매) 기간이 별도로 정해지지 않았으므로 모집예정금액까지 계속 모집(판매) 가능합니다.

주 1) 모집(판매)기간동안 판매된 금액이 일정규모 이하인 경우 이 집합투자증권의 설정이 취소되거나 해지될 수 있습니다.

주 2) 모집(판매)예정금액이 줄거나 모집(판매) 예정기간이 단축될 수 있으며, 이 경우 판매회사 및 집합투자업자의 홈페이지를 통해 공시됩니다.

4. 모집의 내용 및 절차

(1) 모집기간 : 추가형으로 모집기간이 별도로 정해지지 아니하고 계속 모집이 가능합니다.

(2) 모집장소: 판매회사 본·지점

(모집장소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협회(www.kofia.or.kr) 및 집합투자업자

(www.midasasset.com)의 인터넷홈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 모집(매입) 방법 및 내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제2부 “매입, 환매, 전환절차 및 기준가격 적용기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5. 인수에 관한 사항

해당 사항 없음

6. 상장 및 매매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 마이다스 절대수익안정형 증권 투자회사(채권혼합)(39386)

2. 집합투자기구의 연혁

2003.09.16	설립
2003.12.02	최초설정일
2003.09.24	금융감독원 등록
2004.06.25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상의 간접투자기구로 전환
2008.06.12	투자대상 추가(주식선물 및 투자증권 차입 추가)
2009.05.01	자본시장법에 따라 펀드명칭 변경 마이다스 절대수익안정형 투자회사 → 마이다스 절대수익안정형 증권 투자회사(채권혼합)

3. 집합투자기구의 존속기간

이 집합투자기구는 추가 자금 납입이 가능한 집합투자기구로써 별도의 존속기간을 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집합투자기구의 존속기간은 투자자가 투자하고자 하는 기간, 즉, 일반적인 용어로 저축만기와 다를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1) 법령 또는 정관상 일정한 경우에는 강제로 해산(해지)되거나, 사전에 정한 절차에 따라 임의로 해지(해산) 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제5부 중 “집합투자기구의 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집합투자업자

회 사 명	마이다스에셋자산운용주식회사
주 소 및 연 락 처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23-3 하나증권빌딩 8층 (대표전화 : 02-3787-3500)

주1) 집합투자업자(자산운용회사)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제4부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2010.03.31 현재)

① 책임운용전문인력

성명	생년	직위	운용현황		주요 운용경력 및 이력
			운용중인 다른 집합투자기구수	다른 운용 자산규모	
박정환	1965	본부장	204	8,020억	- 국민투자신탁 - 한국투신운용 - 마이다스에셋 채권운용(2003년 9월 ~ 현재)

[운용중인 다른 집합투자기구수 중 성과보수가 약정된 집합투자기구 : 해당사항 없음]

주1) 이 투자회사는 팀운용제로 운용되고 있으며, 채권 운용을 담당하는 채권운용본부가 운용합니다. 상기인은 채권운용 본부의 본부장으로서 이 투자회사의 투자전략 수립 및 투자 의사결정 등에 주도적·핵심적 역할을 수행하는 책임운용 전문인력입니다.

주2) 상기 운용인력의 운용현황 수치에는 주식운용본부 운용 부분(5개 펀드, 91억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② 책임운용전문인력 최근 변경 내역

박정환	2003.12.2~현재

주1) 2010.3월말 기준 최근 3년간의 책임운용전문인력 변경 내역입니다.

6. 집합투자기구의 구조

-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 : 증권(혼합채권형) 투자회사, 추가형, 개방형

명 칭	마이더스 절대수익안정형 증권 투자회사(채권혼합)
금융투자협회 펀드코드	10550

7.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목적

이 투자회사는 4개의 투자전략을 복합적으로 사용하여 주가변동방향에 관계없이 안정적인 수익률을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그러나 상기의 투자목적이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으며,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판매회사 등 이 투자회사와 관련된 어떠한 당사자도 투자원금의 보장 또는 투자목적의 달성을 보장하지 아니합니다.

8.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가. 투자 대상

	40%	
	30%	(“ ”) 4 4 의한 지분증권 중 주권, 신주인수권이 표시 된 것, 법률에 의하여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가)
	40%	4 3 , , (가 A-) ,)
	40%	,

	40%	(4 A3(0))
	15% ()	가 , , 가 , CD ,
	5% (30%)	110 가 가 , 189 가 가 196
	50%	
	50%	
	20%	, , , ,
		268 3
	1. (30) 2. (1)	

- 1) , , ,
- 1
- / 1
- 3 가 가 10% 15
- 가 15
- 2) , , , ,
- 가 , 가 3
- 가 가
- 1

집합투자업자는 투자회사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신탁업자에게 지시할 수 없습니다. 다만, 법령 및 규정에서 예외적으로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투자대상 종류	투자제한의 내용	적용예외
---------	----------	------

	10%	84	
	()	

동일종목 투자	<p>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동일종목의 증권(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 중 지분증권(그 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 증권을 포함한다)과 지분증권을 제외한 증권은 각각 동일종목으로 본다)에 투자하는 행위.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10%를 초과하여 동일종목 투자증권에 투자할 수 있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산총액의 100%까지 동일종목 투자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채증권 - 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원리금의 상환을 보증한 채권 ○ 자산총액의 30%까지 동일종목 투자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채증권 - 특수채증권(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원리금의 상환을 보증한 채권은 제외한다) 및 직접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어음[법 제 4 조 제 3 항에 따른 기업어음증권 및 법 시행령 제 79 조 제 2 항 제 5 호 각 목의 금융기관이 할인, 매매, 중개, 또는 인수한 어음만 해당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 시행령 제 79 조제 2 항제 5 호가목내지 사목까지의 금융기간이 발행한 어음 또는 양도성 예금증서와 같은 법 시행령제 79 조제 2 항 제 5 호 가목 및 마목 내지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발행한 채권 - 법 시행령 제 79 조제 2 항제 5 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채권 (모집의 방법으로 발행한 채권만 해당한다) 또는 어음 -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으로서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 또는 시행령제 79 조제 2 항 제 5 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간이 지급을 보증한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 -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 동일 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그 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의 시가총액비중이 100 분의 10 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시가총액비중까지 투자하는 경우. 이 경우 지분증권의 시가총액비중은 유가증권시장, 코스닥시장 또는 해외 증권시장별로 매일의 그 지분증권의 최종시가의 총액을 그 시장에서 거래되는 모든 종목의 최종시가의 총액을 합한 금액으로 나눈 비율을 1 개월간 평균한 비율로 계산하며, 매월말 기준으로 산정하여 그 다음 1 개월간 적용한다. 	최초설정일로부터 1 개월간
---------	--	----------------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 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파생상품 매매	파생상품의 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이 집합투자기구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가액의 100%를 초과하는 행위	최초설정일로부터 1개월간
	파생상품의 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이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는 행위	
	파생상품의 매매와 관련하여 기초자산 중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그 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의 가격 변동으로 인한 위험평가액이 각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최초설정일로부터 1개월간
	파생상품 거래에 따른 위험평가액과 파생상품을 제외한 회사재산 평가액을 합한 금액인 총위험평가액이 자산 총액의 100%를 초과하는 행위	
계열회사 발행 주식	법 시행령 제 86 조로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여 그 집합투자업자의 계열회사가 발행한 증권(법 제 189 조의 수익증권, 그 밖에 법 시행령 제 86 조로 정하는 증권을 제외하며, 계열회사가 발행한 지분증권과 관련한 증권예탁증권 및 법 시행령 제 86 조로 정하는 투자대상자산을 포함한다)을 취득하는 행위.	
후순위채권	집합투자자산을 그 발행인이 파산하는 때에 다른 채무를 우선 변제하고 잔여재산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채무를 상환한다는 조건이 있는 후순위채권에 투자하는 행위	

가 , 가 3
(,)

9.

가.

- 1) 이 투자회사는 주가변동방향과 관계없이 안정적인 수익을 얻기 위하여 주식에 30%이하, 나머지를 채권 및 유동성 등에 투자합니다. 각 부문의 운용 전략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주식 및 파생상품 투자전략

주가변동방향과 관계없이 안정적인 수익을 얻기 위하여 4 가지의 투자전략(포트폴리오 헤지전략, 선물시스템트레이딩, 옵션합성전략, Event Arbitrage)를 복합적으로 사용합니다.

- ① 포트폴리오 헷지 전략

A. 포트폴리오 헷지전략

- 현물 주식을 매수함과 동시에 지수 선물을 매도하는 전략입니다.
- 선물 매도 헷지를 통하여 시장방향성과는 무관한 포지션을 구축하게 되며, 시장의 움직임과는 상관없이 모델포트폴리오의 시장대비 초과수익을 부분만을 수익으로 획득하게 됩니다.

B. Pair Trading 전략

- 모델 포트폴리오 보유종목 중 통계적 분석을 통하여 대체 가능한 종목을 발굴, 이의 교체매매를 통하여 추가수익을 올리는 전략입니다.
- 유사한 주가흐름을 보이는 종목들간의 가격차가 일정수준을 벗어날 경우 고평가된 종목을 매도하고 저평가된 종목을 매수한 뒤, 가격차가 정상수준을 회복하면 매도했던 종목은 매수하고, 매수했던 종목은 매도합니다. 개별종목뿐만아니라 지수간 매매도 가능합니다.

② 선물시스템트레이딩 전략: KOSPI200 주가지수선물 데이터를 기초로 구축된 통계량의 추세를 이용하는 선물 매매전략입니다.

③ 옵션합성전략

- KOSPI200 선물과 옵션을 활용하여 시장전망과 변동성 및 내재가치 대비 고평가/저평가 여부에 따라 여러 가지 다양한 합성전략을 구사하여 시장의 방향에 관계없이 이익을 추구하는 전략입니다.

④ Event Arbitrage

- 선별적으로 공모주에 투자하여 추가 수익을 추구합니다.
- 투자 기업의 합병, 영업 양수도시 주식매수 청구권 행사시 현 주가수준이 매수청구권 가격보다 낮은 경우 매수하여 주가상승시 차익을 실현하거나, 매수청구권을 행사하여 수익을 획득하는 전략을 사용합니다.

나) 채권 투자전략

① 회사는 채권에 투자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우량채권에 주로 투자하여 채권 투자에 따르는 채무불이행의 위험을 최소화할 것입니다.

- 국공채, 지방채, 특수채
- 국내 신용평가기관의 신용평가등급이 A(-) 이상인 회사가 발행하는 사채권 또는 주식관련사채

2) 이 투자회사는 4 가지의 절대수익 추구 전략을 활용하는 운용전략상의 특성으로 인하여 참고지수를 정하지 아니합니다. 참고지수가 없으므로 투자판단시 한층 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3) 집합투자업자는 본 투자전략을 통하여 이 투자회사의 수익률 향상을 위해 노력할 것이나, 이 투자회사의 투자전략이 반드시 수행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4) 위험 관리 : 이 투자회사는 국내 주식과 채권에 주로 투자하는 채권혼합형 투자회사로서, 주식 및 채권의 가격변동에 의한 손실 위험에 노출됩니다. 개별 주식, 채권의 가격 변동으로 인한 위험을 제한하

	가

나. 특수 위험

	가 ,) (가 가 가
	가 . Event Arbitrage 가

나. 기타 투자위험

구 분	투자위험의 주요내용
유동성 위험	증권시장규모 등을 감안할 때 거래량이 풍부하지 못한 종목에 투자할 경우 투자대상종목의 유동성 부족에 따른 환금성의 결여가 투자회사재산 가치의 하락을 초래할 위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순자산가치 변동 위험	가 가 가
환매연기위험	특별한 사유로 인해 환매가 연기될 수 있습니다. 환매가 연기되는 사유에 대해서는 아래의 “11. 매입, 환매, 전환절차 및 기준가격 적용기준”에서 상세하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투자회사 해지의 위험	이 투자회사가 1월간 계속하여 투자회사의 원본액이 100억원에 미달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가 투자회사를 해지하는 등의 사유로 투자자의 동의없이 이 투자회사가 해지될 수 있습니다.

다. 이 집합투자기구에 적합한 투자자 유형

이 투자회사는 채권의 안정적인 이자수익을 주로 추구하되 일부분을 주식에 투자해 추가수익을 얻고자하므로 5등급의 위험 중 3등급에 해당되는, 중간위험의 투자위험을 지니고 있으며, 주식투자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손실위험을 감수할 수 있는 장기투자고객에게 적합합니다.



<마이다스에셋자산운용주식회사 자체 투자위험등급 기준>

위험등급	분류기준	상세설명
1등급	매우 높은 위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식(주식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증권 포함)에 60% 이상 투자하며, 주식시장 이상의 수익을 추구하는 공격적인 운용전략을 사용하는 집합투자기구 - 파생결합증권 집합투자기구(원금 보존 추구형 제외)
2등급	높은 위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식(주식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증권 포함)에 60% 이상 투자하며, 다음의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파생상품 등을 활용하여 투자위험을 축소하는 전략을 사용하는 집합투자기구 ■ 주식시장 수준의 이익을 추구하는 인덱스 운용전략을 사용하는 집합투자기구 - 주식(주식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증권 포함)에 60% 이하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3등급	중간위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식(주식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증권 포함)에 30% 이하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 파생결합증권 집합투자기구(원금 보존 추구형)
4등급	낮은 위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공채 등 채무증권에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5등급	매우 낮은 위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MMF

11. 매입, 환매, 전환절차 및 기준가격 적용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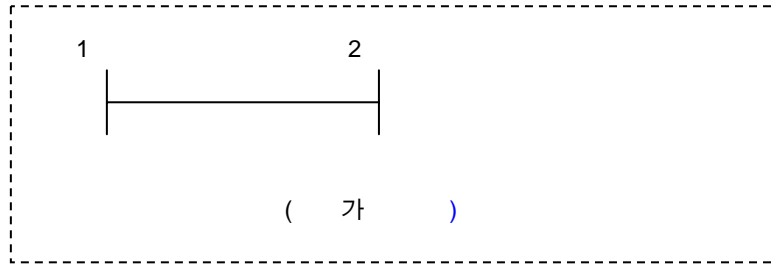
가. 매입

(1) 매입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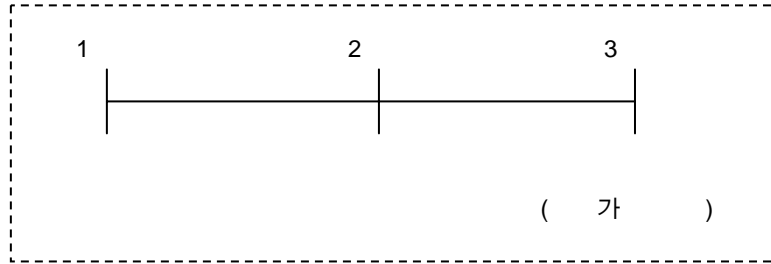
이 투자회사의 주식을 취득하시려면 판매회사 영업시간 중 판매회사 창구에서 직접 매입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판매사에서 온라인 판매를 개시하는 경우, 온라인을 통한 매입도 가능합니다.

(2) 매입청구시 적용되는 기준가격

(가) 오후 5시 이전에 자금을 납입한 경우 : 자금납입일로부터 제2영업일(D+1)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



(나) 오후 5시 경과 후에 자금을 납입한 경우: 자금납입일로부터 제3영업일(D+2)에 공고되는 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



(다) 이 투자회사를 최초로 설정하는 때에는 투자회사 최초설정일의 기준가격은 1,000원으로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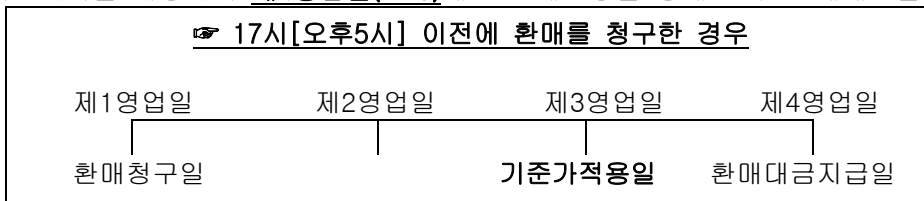
나. 환매

(1) 환매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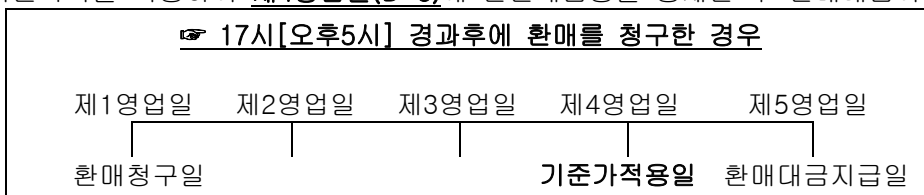
이 투자회사의 주식을 환매하시려면 판매회사 영업시간 중 판매회사 창구에서 직접 환매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2) 환매청구시 적용되는 기준가격

(가) 오후 5시 이전에 환매를 청구한 경우 : 환매를 청구한 날로부터 제3영업일(D+1)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제4영업일(D+3)에 관련세금등을 공제한 후 환매대금을 지급합니다.



(나) 오후 5시 경과 후에 환매를 청구한 경우 : 환매를 청구한 날로부터 제4영업일(D+2)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제4영업일(D+3)에 관련세금등을 공제한 후 환매대금이 지급됩니다.



(3) 판매회사가 해산·허가취소, 업무정지 등의 사유(이하 “해산등”)로 인하여 환매청구에 응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업자에 직접 청구할 수 있으며, 집합투자업자가 해산 등으로 인하여 환매에 응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탁업자에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환매수수료 : 해당사항 없음

(4) 매입청구 및 환매청구의 취소(정정) 등

이 투자회사 주식의 매입청구 및 환매청구의 취소 또는 정정은 매입청구일 및 환매청구일 17시[오후 5시]

이전까지만 가능합니다. 기준시점은 판매회사의 전산시스템에 의하여 거래전표에 표시된 시간으로 구분하여 처리합니다.

(5) 일부환매의 청구

주주는 보유한 주식 중 일부에 대하여 환매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투자자가 주식의 일부에 대한 환매를 청구한 경우 판매회사는 그 주식을 환매하고, 잔여주식에 대하여는 새로운 주식을 교부합니다. 단, 환매청구 등의 사유로 보유주식의 수가 1만주 미만이 되는 경우 주주는 그 1만주 미만의 잔여주식에 대하여도 환매를 청구하여야 합니다.

(6) 환매제한

회사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환매청구에 응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① 주주 또는 질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자를 정하기 위하여 일정한 날을 정하여 투자자명부에 기재된 주주 또는 질권자를 그 권리를 행사할 투자자 또는 질권자로 보도록 한 경우로서 이 일정한 날의 전전영업일(17시 경과 후에 환매청구를 한 경우 전전영업일)과 그 권리를 행사할 날까지의 사이에 환매청구를 한 경우
- ② 해산한 경우
- ③ 회사의 순자산액에 10억에 미달하는 경우
- ④ 결산일 전영업일(15시 경과 후에 환매청구를 한 경우 전전영업일)에 환매를 청구하는 경우
- ⑤ 법령 또는 법령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환매가 제한되는 경우

(7) 환매연기

① 주식의 환매를 요구 받은 회사가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환매일에 환매대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 회사는 주식의 환매를 연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지체 없이 환매연기 사유 및 주주총회 개최 등 향후 처리계획을 주주 및 판매회사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 회사 재산의 매각이 불가능하여 사실상 환매에 응할 수 없는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

가) 뚜렷한 거래부진 등으로 회사 재산을 처분할 수 없는 경우

나) 증권시장 등의 폐쇄·휴장 또는 거래정지 등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회사 재산을 처분할 수 없는 경우

다)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 주주의 이익 또는 투자자간의 형평성을 해할 우려가 있는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

가) 부도발생 등으로 인하여 회사 재산을 처분하여 환매에 응하는 것이 주주의 이익을 해칠 염려가 있는 경우

나) 회사 재산에 속하는 자산의 시가가 없어서 환매청구에 응하는 경우에 다른 주주의 이익을 해칠 염려가 있는 경우

다) 대량의 환매청구에 응하는 것이 주주간의 형평성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환매를 청구받거나 요구받은 판매회사, 신탁업자, 회사 등이 해산등으로 인하여 주식을 환매할 수 없는 경우

- 금융위원회가 환매연기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유

② 주식의 환매를 연기한 경우 회사는 환매를 연기한 날부터 6주 이내에 주주총회를 개최하여 다음의 사항을 의결하여야 합니다.

가) 환매를 재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환매대금의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나) 환매연기를 계속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환매연기기간 및 환매 재개 시 환매대금의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다) 일부환매를 하는 경우에는 환매연기의 원인이 되는 자산의 처리방법

③ 환매연기기간 중에는 회사 주식의 발행 및 판매를 할 수 없습니다.

④ 회사는 주주총회에서 주식의 환매에 관한 사항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환매에 관하여 정한 사항의 실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계속하여 환매를 연기할 수 있습니다.

⑤ 주주총회에서 환매에 관한 사항이 의결되거나 환매를 계속 연기하는 경우 회사는 지체 없이 다음의 사항을 주주 및 판매회사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 주주총회에서 환매에 관한 사항을 의결한 경우

가) 환매에 관하여 의결한 사항

나) 환매가격

다) 일부환매의 경우에는 그 뜻과 일부환매의 규모

- 환매연기를 계속하는 경우

가) 환매를 연기하는 사유

나) 환매를 연기하는 기간

다) 환매를 재개하는 경우 환매가격, 환매대금의 지급방법 및 지급시기

라) 일부환매의 경우에 그 뜻과 일부환매의 규모

- ⑥ 환매연기사유 전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해소되어 환매를 재개할 수 있을 경우 회사는 환매가 연기된 주주 및 판매회사에 대하여 환매한다는 뜻을 통지하고 다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환매대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 환매연기 주주총회일 이후에 환매를 재개하는 경우 : 주주총회에서 정한 바에 따라 환매대금 지급
 - 환매연기 주주총회의 개최 전에 환매를 재개하는 경우 : 회사가 정하는 바에 따라 환매대금 지급. 이 경우 회사는 환매연기 주주총회를 개최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⑦ ①, ⑤ 및 ⑥에 의한 통지는 서면 또는 컴퓨터통신으로 하여야 합니다.

(8) 주식의 일부환매

- ① 회사는 집합투자재산의 일부가 환매연기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그 일부에 대하여는 환매를 연기하고 나머지에 대하여는 투자자가 보유하고 있는 투자회사 주식의 지분에 따라 환매에 응할 수 있습니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일부환매가 결정된 경우에는 회사가 일부환매를 결정한 날(환매연기총회에서 일부환매를 결의한 경우에는 그 날)의 전일을 기준으로 환매연기사유에 해당하는 자산을 정상자산으로부터 분리하여야 합니다.
- ③ 회사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환매연기사유에 해당하는 자산을 정상자산으로부터 분리한 경우에는 환매연기사유에 해당하는 자산만으로 별도의 회사를 설립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주주는 이 회사 주식의 보유주식수에 따라 별도의 회사의 주식을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
- ④ 회사는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정상자산으로 구성된 회사에 대하여는 제60조의 규정에 따라 당해 종류 주식의 기준가격을 산정하여 당해 종류 주식을 발행 및 판매할 수 있다.

(9) 빈번한 환매와 관련한 유의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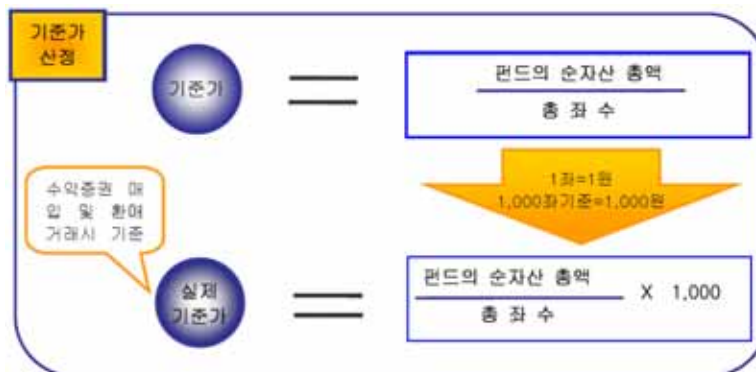
이 투자회사는 조기 환매시 환매수수료가 부과되므로, 투자자가 이 투자신탁 주권을 지나치게 빈번하게 환매할 경우 투자 수익률 측면에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12. 기준가격 산정기준 및 집합투자재산의 평가

가. 기준가격의 산정 및 공시

구 분	내 용
산정방법	당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은 그 직전일의 대차대조표상에 계상된 투자회사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금액(이하 "순자산총액"이라 한다) 을 직전일의 총 주식 수로 나누어 1,000좌 단위로 4사5입하여 원미만 둘째자리까지 계산합니다
산정주기	기준가격은 매일 산정합니다.
공시시기	산정된 기준가격을 매일 공고·게시합니다.
공시방법	1,000좌 단위로 원미만 셋째자리에서 4사5입하여 원미만 둘째자리로 계산하여 공시
공시장소	판매회사영업점, 집합투자업자(http://www.midasasset.com)· 판매회사· 금융투자협회(http://www.kofia.or.kr) 인터넷홈페이지

주1) 공휴일, 국경일 등은 기준가격이 공시되지 않습니다.



나. 집합투자재산의 평가방법

모집합투자회사를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자산은 그 종류별로 다음과 같이 평가합니다.

대상자산	평가방법
①상장주식	평가기준일에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가
②비상장주식	취득원가 또는 채권평가회사·공인회계사법에 의한 회계법인·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을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신용평가업무에 대한 허가를 받은 자가 제공하는 가격정보를 기초로 한 가격
③장내파생상품	그 장내파생상품이 거래되는 증권시장 등이 발표하는 가격
④상장채권	평가기준일에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가를 기준으로 2이상의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정보를 기초로 한 가격 -----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3월간 계속 매월 10일 이상 증권시장에서 시세가 형성된 채권에 한정
⑤비상장채권	2이상의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정보를 기초로 한 가격 (④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상장채권을 포함)
⑥기업어음 또는 금융기관이 발행한 채무증서	2이상의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을 기초로 한 가격
⑦집합투자증권	평가기준일에 공고된 기준가격 또는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가 정하는 가격. 다만, 상장된 집합투자증권은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가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 1) 이 투자회사는 운용 및 판매 등의 대가로 수수료 및 보수를 지급하게 되며, 가입자격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보수 및 수수료 등의 차이가 있습니다.
- 2) 이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자는 판매보수와 관련하여 집합투자증권의 판매회사(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로부터 해당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자에게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용역의 대가에 관한 내용이 기재된 자료를 교부받고 설명받으셔야 합니다.

가. 투자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수수료

구분	지급비율 (또는 지급금액)	지급시기
선취판매수수료	신주배정가액의 0.50%이하	매입시
후취판매수수료	해당사항 없음	-
환매수수료	해당사항 없음	환매시

나.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구분	지급비율 (연간, %)	지급시기
집합투자업자보수	연 0.45%	매 3 개월 후급
판매회사 보수	연 0.55%	
신탁업자 보수	연 0.02%	
일반사무관리보수	연 0.05%	
기타 비용	연 0.11%	사유발생시
총보수 및 비용	연 1.18%	-
증권 거래비용	연 0.25%	사유발생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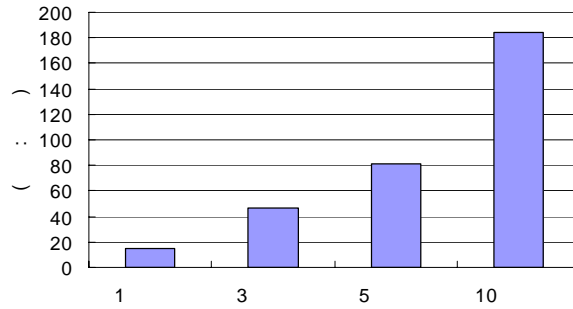
주1) 기타비용은 이 투자회사에서 경상적, 반복적으로 지출되는 비용(증권거래비용 및 금융비용 제외)으로써 2008.9.15 기준으로 최근 1년 동안의 자료를 기초로 한 비용으로 실제비용은 이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주2) 증권거래비용은 2008.9.15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증권 및 장내파생상품의 거래수수료와 콜수수료 금액 등을 기준으로 산정하였습니다. 기타비용 및 증권거래비용 외에 증권신고서 제출에 따른 발행분담금 등의 비용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1,000만원 투자시 투자자가 부담하게 되는 수수료 및 보수·비용의 투자기간별 예시> (단위:만원)

구분	1 년후	3 년후	5 년후	10 년후
수수료 및보수·비용	14.66	46.21	80.99	184.36

주1) 투자자가 1,000만원을 투자했을 경우 직·간접적으로 부담할 것으로 예상되는 수수료 또는 총보수·비용을 **누계액으로** 산출한 것입니다. 이익금은 모두 재투자하며, 연간 투자수익률은 5%(보수 차감 전 기준), 수수료율 및 총 보수·비용비율은 일정하다고 가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실제 투자자가 부담하게 되는 보수 및 비용은 기타비용의 변동, 보수의 인상 또는 인하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4. 이익 배분 및 과세에 관한 사항

가. 이익배분

- (1) 회사는 이익금(당해 종류 주식)의 범위 내에서 주주에게 현금 또는 새로이 발행하는 주식으로 분배합니다. 이 경우 주주의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동 분배금에 대해서는 회사의 주식(당해 종류 주식)을 매입합니다.
- (2) 결산분배금 지급의 경우에는 매 결산기말 현재의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 또는 등록된 질권자에게 그 소유 또는 질권 등록된 주식 수에 비례하여 지급합니다.
- (3) 회사가 이익금 전액을 새로이 발행하는 주식으로 분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발행할 주식의 수, 발행시기 등 주식발행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이사회를 거쳐야 합니다.
- (4) 회사가 이익금을 초과하여 현금으로 분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사회를 거쳐야 하며, 동 이사회에서 정한 기준일 현재 주주의 권리가 있는 자에게 이사회에서 정한 일자까지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동 지급일은 이사회 결의일로부터 1 개월을 초과할 수 없으며, 분배금은 순자산액에서 최저순자산액을 공제한 금액 범위 내로 합니다.
- (5) 주주가 분배금 등의 지급개시일 이후 5년간 결산분배금 또는 청산분배금 지급을 청구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권리를 상실하고 판매회사에 귀속됩니다.

나. 과세

- (1) 투자회사에 대한 과세 : 별도의 세금부담이 없는 것이 원칙

발생소득에 대한 세금 외에 각 결산기 사업소득 중 배당가능이익의 100분의 90 이상을 배당한 경우 그 금액을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공제되며,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하여 투자회사의 경우 환매 또는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증권거래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또한 회사가 증권거래법에 의한 한국거래소시장을 통하여 투자했던 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증권거래세가 면제되고 농어촌특별세도 비과세입니다.

주) 증권거래세 면제 요건

- 증권거래법에 의한 공모 최소투자자가 30명 이상인 경우
(단, 소수투자자가 전체 집합투자기구의 95% 이상 소유시 면제 불가)
- 조세특례제한법 제74조제3항의 기금만으로 구성된 집합투자기구

(2) 주주에 대한 과세·원천징수 원칙

- 주주는 투자회사로부터의 이익을 지급받는 날(특약에 따라 원본에 전입되는 날 및 존립기간 연장되는 날 포함)에 과세이익에 대한 세금을 원천징수 당하게 되며, 투자회사의 주식을 계좌간 이체, 계좌의 명의변경, 실물양도의 방법으로 거래하는 경우에도 보유기간 동안 발생한 과세이익에 대한 세금을 원천징수하고 있습니다.
- 다만, 해당 투자회사로부터의 과세이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투자회사가 투자하는 증권시장에 상장된 증권(채권 및 외국집합투자증권 등 제외) 및 이를 대상으로 하는 선물, 벤처기업의 주식 등에서 발생하는 매매·평가 손익을 분배하는 경우 당해 매매·평가 손익은 과세대상인 배당소득금액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 투자회사의 주주는 과표기준가를 기준으로 과세됩니다. 과표기준가격이란 세금을 산정하기 위한 기준가격으로 투자회사 재산의 운용수익 중 채권이자에 대한 이자소득, 증권의 배당에 대한 배당소득 등 과세대상 수익만을 고려하여 산출, 공시됩니다.

(3) 주주에 대한 과세율·개인 15.4%(주민세 포함), 일반법인 14%

- 거주자 개인이 받는 투자회사로부터의 과세이익에 대해서는 15.4%(소득세 14%, 주민세 1.4%)의 세율로 원천징수됩니다. 이러한 소득은 개인의 연간 금융소득 합계액(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이 4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 되나, 연간 금융소득(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이 4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4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다른 종합소득(부동산임대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기타소득)과 합산하여 개인소득세율로 종합과세 됩니다.
- 내국법인이 받는 투자회사의 과세이익은 14%의 세율로 원천징수(금융기관 등의 경우에는 제외)됩니다. 이러한 소득은 법인의 결산 시점에 투자회사로부터 받게 되는 소득과 법인의 다른 소득 전체를 합산한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하며, 이전에 납부한 원천징수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받게 됩니다.

※ 상기 투자소득에 대한 과세내용은 정부 정책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증권거래세 면제대상 범위가 변경됨에 따라 이 투자회사의 경우 공모투자회사임에도 불구하고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일정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증권거래세 면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15. 발기인·감독이사에 관한 사항

가. 발기인에 관한 사항

성명	설립월일	주요경력	소유주식수	비고
마이다스에셋자산운용(주)	1999.2.1	-	117,239,523	-

나. 감독이사에 관한 사항

직명	성명	생년월일	소유주식수	보수
----	----	------	-------	----

이사	라동민	1959년5월5일	-	월 200,000원
이사	박진국	1948년7월2일	-	월 200,000원

다. 감독이사의 보수지급기준

- 감독이사의 보수에 관한 기준은 주주총회의 의결로 이를 정한다. 다만, 설립 후 최초의 이사에 대한 보수는 발기인 총회에서 정한다.
- 감독이사의 보수는 1인당 월 100만원을 초과하지 못한다.
- 감독이사의 퇴직금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재무정보

이 투자회사의 재무제표는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업회계기준중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되었으며, 동 재무제표에 대하여 선진회계법인으로부터 외부감사를 받은 결과 제6기, 제5기 각각 감사의견은 적정입니다.

가. 요약재무정보

(단위: 원)

대차대조표			
항목	제7기 반기	제6기	제5기
	2010-03-15	2009-09-15	2008-09-15
운용자산	5,083,551,743	5,563,442,204	5,873,708,171
증권	4,537,864,717	5,142,284,451	4,903,519,591
파생상품			
부동산/실물자산			
현금 및 예치금	145,687,026	121,157,753	70,188,580
기타 운용자산	400,000,000	300,000,000	900,000,000
기타자산	54,568,378	445,481,000	94,310,766
자산총계	5,138,120,121	6,008,923,204	5,968,018,937
운용부채			
기타부채	13,745,097	832,342,226	60,524,108
부채총계	13,745,097	832,342,226	60,524,108
원본	5,009,815,654	5,176,580,978	5,907,494,829
수익조정금	5,270,701		
이익잉여금	109,288,669		
자본총계	5,124,375,024	5,176,580,978	5,907,494,829
손익계산서			
항목	제7기 반기	제6기	제5기
	2009-09-16~2010-03-15	2008-09-16~2009-09-15	2007-09-16~2008-09-15
운용수익	141,125,342	447,328,022	131,816,601
이자수익	69,973,227	165,987,475	252,163,577
배당수익	14,583,210	22,590,125	19,946,100
매매/평가차익(손)	55,138,905	258,401,061	-140,403,977
기타 수익	1,430,000	349,361	110,901
운용비용	31,836,673	70,902,641	85,462,685
관련회사 보수	26,806,196	58,835,711	69,269,081
매매수수료	1,377,974	3,521,860	10,490,570
기타 비용	3,652,503	8,545,070	5,703,034
당기순이익	109,288,669	376,425,381	46,353,916

매매회전율(%)	73.27	279.32	273.61
----------	-------	--------	--------

나. 대차대조표

(단위: 원)

항목	제7기 반기	제6기	제5기
	2010-03-15	2009-09-15	2008-09-15
자 산			
I. 운 용 자 산	5,083,551,743	5,563,442,204	5,873,708,171
1. 현금 및 예치금	145,687,026	121,157,753	70,188,580
예 치 금	80,898,276	40,094,443	14,607,580
증 거 금	64,788,750	81,063,310	55,581,000
2. 대 출 채 권	400,000,000	300,000,000	900,000,000
콜 론	400,000,000	300,000,000	900,000,000
R P 매 수			
매 입 어 음			
대 출 금			
3. 유 가 증 권	4,537,864,717	5,142,284,451	4,903,519,591
지 분 증 권	1,489,634,050	1,661,204,500	1,141,322,900
채 무 증 권	3,048,230,667	3,481,079,951	3,762,196,691
수 익 증 권			
기타 유가증권			
4. 과 생 상 품			
과 생 상 품			
5. 부동산 및 실물자산			
부 동 산			
실 물 자 산			
6. 기타 운용자산			
기타 운용자산			
II. 기 타 자 산	54,568,378	445,481,000	94,310,766
1. 매도가능증권미수금		427,618,780	
2. 정 산 미 수 금	13,650,000		
3. 미 수 이 자	27,510,668	17,862,220	94,310,766
4. 미 수 배 당 금	13,407,710		
5. 기 타 미 수 금			
6. 외화환산손익조정			
7. 과생상품평가손익조정			
자 산 총 계	5,138,120,121	6,008,923,204	5,968,018,937
부 채			
I. 운 용 부 채			
1. 과 생 상 품			

2. R P 매도			
3. 기타 운용부채			
II.기 타 부 채	13,745,097	832,342,226	60,524,108
1. 매도가능증권미지급금		435,187,920	
2. 정 산 미 지 급 금		12,200,000	20,400,000
3. 해 지 미 지 급 금			
4. 수 수 료 미 지 급 금	13,745,097	16,855,350	17,709,285
5. 미지급 이익분배금		368,098,956	22,414,823
6. 기 타 미 지 급 금			
부 채 총 계	13,745,097	832,342,226	60,524,108
자 본			
I. 원 본	5,009,815,654	5,176,580,978	5,907,494,829
II. 이 익 잉 여 금	114,559,370		
자 본 총 계	5,124,375,024	5,176,580,978	5,907,494,829
부 채 및 자 본 총 계	5,138,120,121	6,008,923,204	5,968,018,937

다. 손익계산서

(단위: 원)

항목	제7기 반기	제6기	제5기
	2009-09-16~ 2010-03-15	2008-09-16~ 2009-09-15	2007-09-16~ 2008-09-15
I. 운 용 수 익	141,125,342	447,328,022	131,816,601
1. 투 자 수 익	85,986,437	188,926,961	272,220,578
이 자 수 익	69,973,227	165,987,475	252,163,577
배 당 금 수 익	14,583,210	22,590,125	19,946,100
수 수 료 수 익			
기타 투자수익	1,430,000	349,361	110,901
2. 매매차익과 평가차익	917,562,510	4,133,904,116	2,576,441,120
지분증권매매/평가차익	79,208,164	952,480,248	156,576,589
채무증권매매/평가차익	45,924,346	123,865,868	41,564,531
수익증권매매/평가차익			
현금및대출채권매매/평가차익			
파생상품매매/평가차익	792,430,000	3,057,558,000	2,378,300,000
외환거래/평가차익			
기 타 이 익			
3. 매매차손과 평가차손	862,423,605	3,875,503,055	2,716,845,097
지분증권매매/평가차손	56,590,264	315,519,948	365,161,192
채무증권매매/평가차손	13,498,341	173,233,107	141,258,905
수익증권매매/평가차손			

현금및대출채권매매/평가차손			
파생상품매매/평가차손	792,335,000	3,386,750,000	2,210,425,000
외환거래/평가차손			
기 타 차 손			
II.운 용 비 용	31,836,673	70,902,641	85,462,685
1. 운 용 수 수 료	11,418,951	25,026,846	29,403,904
2. 판 매 수 수 료	13,611,132	29,916,147	35,291,573
3. 수 탁 수 수 료	1,776,113	3,892,718	4,573,604
4. 지 급 수 수 료	1,377,974	3,521,860	10,490,570
5. 기 타 비 용	3,652,503	8,545,070	5,703,034
III. 당기순(손실)이익	109,288,669	376,425,381	46,353,916
1,000좌당 순(손실)이익	22	70	7

2. 연도별 설정 및 환매현황

(단위 : 억주, 억원)

기간	기간초 잔고		회계기간 중				기간말 잔고	
			설정(발행)		환매			
	주수 (출자지 분수)	금액	주수 (출자지 분수)	금액	주수 (출자지 분수)	금액	주수 (출자지 분수)	금액
2007-09-16 ~2008-09-15	85	85	11	11	37	37	59	59
2008-09-16 ~2009-09-15	59	59	1	1	8	8	52	55
2009-09-16 ~2010-03-14	52	52	5	5	7	7	50	51

* 상기 설정 및 환매 내역 중 기간별 재투자로 인한 좌수 변동에 해당하는 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펀드명	기간	기간중 재투자	
		좌수	금액
마이다스절대수익안정형투자회사	2007-09-16~2008-09-15	479,170,888	479,209,217
	2008-09-16~2009-09-15	31,339,573	31,339,573
	2009-09-16~2010-03-14	367,545,185	367,545,185

3. 투자회사의 출자금에 관한 사항

가. 출자지분의 총수

(2010.3.31일 현재)

발행할 출자지분의 총수	발행한 출자지분의 총수	미발행출자지분의 총수
1조주(1,000,000,000,000주)	5,058,565,477주	994,941,434,523주

나. 발행한 출자지분의 내용

(2010.3.31일 현재)

구분	종류	발행주식수	발행가액 총수	비고
투자회사주식	무액면,기명식	51억주	51억원	-

4.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세전 기준)

투자실적 추이는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도움을 드리하고자 작성된 것으로 연평균 수익률은 해당기간 동안의 평균 수익률을, 연도별 수익률은 기간별 수익률 변동성을 나타낸 것입니다. 따라서, 이 수익률은 투자회사의 기간에 따른 운용 실적으로 투자자의 투자시기에 따라 수익률이 달라질 수 있으며, 과거의 투자실적이 미래의 투자실적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가. 연평균수익률

연도	최근 1년	최근 2년	최근 3년	최근 5년	설정일 이후
	(09.04.01~10.03.31)	(08.04.01~10.03.31)	(07.04.01~10.03.31)	(05.04.01~10.03.31)	(05.12.07~10.03.31)
마이다스절대수익안정형투자회사	6.18%	5.01%	4.41%	5.51%	5.26%

주) 당 펀드는 운용전략상의 특징으로 인하여 적정 벤치마크가 없습니다.

나. 연도별 수익률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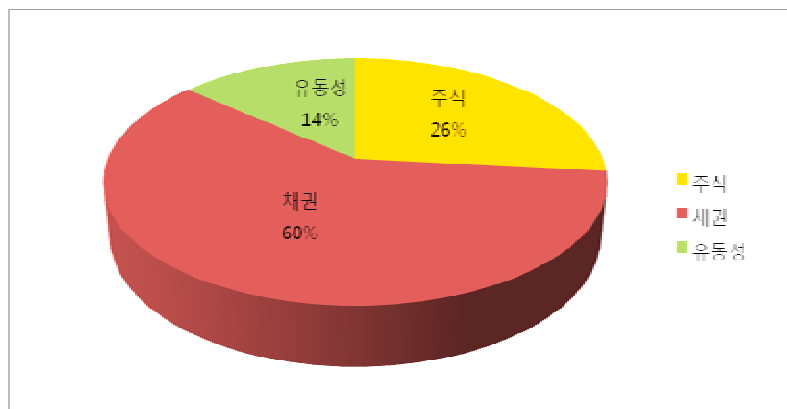
기간	최근 1년차 (09.04.01~10.03.31)	최근 2년차 (08.04.01~09.03.31)	최근 3년차 (07.04.01~08.03.31)	최근 4년차 (06.04.01~07.03.31)	최근 5년차 (05.04.01~06.03.31)
마이다스절대수익안정형투자회사	6.18%	3.84%	3.23%	5.13%	9.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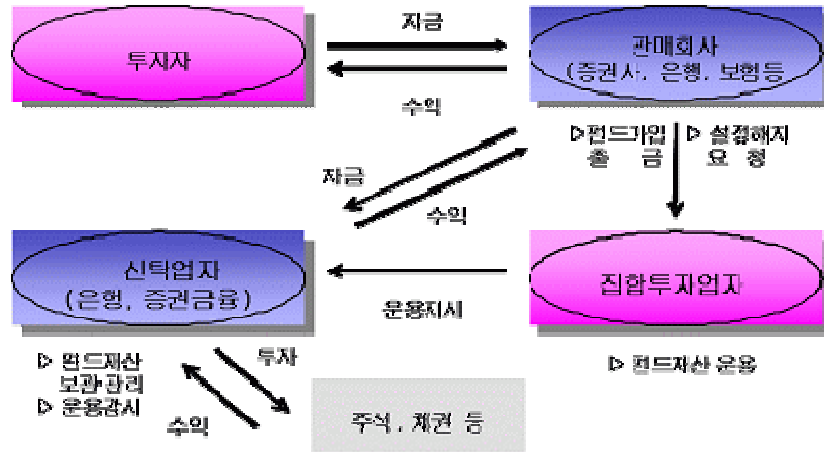
주) 당 펀드는 운용전략상의 특징으로 인하여 적정 벤치마크가 없습니다.

다. 집합투자기구의 자산구성 현황

(2010.03.31기준)

통화별 구분	증권				파생상품		부동산	특별자산		단기대출 및 예금	기타	자산 총액
	주식	채권	어음	집합투자증권	장내	장외		실물자산	기타			
KRW	1,364.	3,057.	0.	0.	40.	0.	0.	0.	0.	650.	14.	5,126.
합계	1,364.	3,057.	0.	0.	40.	0.	0.	0.	0.	650.	14.	5,126.





1.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가. 회사개요

회사명	마이다스에셋자산운용주식회사
주소 및 연락처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23-3 (연락처 : 02-3787-3589, www.midasasset.com)
회사 연혁	1999.02.01 회사설립등기(납입자본금 70 억원) 1999.03.10 자산운용업 등록(금융감독위원회) 1999.07.07 상호변경: 마이다스자산운용주 → 마이다스에셋자산운용주 2004.02.01 무상증자(납입자본금 100 억원)
자본금	100 억원
주요주주현황	현희현 (10%), 이재관(10%) 등

나. 주요업무

[주요업무]

투자회사의 설정, 해지 / 투자회사의 운용, 운용지시 / 투자회사 재산의 운용

[선관의무]

투자회사의 집합투자업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집합투자재산을 관리하여야 하며, 집합투자자의 이익을 보호하여야 합니다.

[책임]

집합투자업자가 법령, 정관 또는 투자설명서 등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투자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집합투자업자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관련되는 이사 또는 감사(감사위원회 위원을 포함)에게도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집합투자업자는 이들과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연대책임]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판매회사, 일반사무관리회사 및 채권평가회사는 법에 의하여 집합투자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집니다.

다. 최근 2개 사업연도 요약 재무내용(억원)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항 목	'09.3.31	'08.3.31	항 목	'09.3.31	'08.3.31
현금및예치금	180	144	영업수익	256	282
기타자산	308	304	영업비용	141	110
자산총계	488	448	영업이익	116	173
예수부채	5	9	영업외수익	0	0
기타부채	30	37	영업외비용	2	2
부채총계	34	45	법인세차감전순이익	113	171
자본금	100	100	법인세비용	33	48
잉여금	347	301	당기순이익	81	123
기타포괄손익누계액	7	2			
자본총계	454	403			

라. 운용자산 규모(2010. 03. 31 현재 / 억원)

집합투자기구 종류	증권			부동산	특별자산	혼합자산	MMF	총계
	주식	채권	ELS					
수탁고	17,624	1,203	7,666	3,829	128	-	-	30,451

3. 집합투자재산 관리회사에 관한 사항(신탁업자)

가. 회사의 개요

회 사 명	(주)하나은행
주소 및 연락처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1가 101-1 (☎02-1599-111)
홈페이지 주소	www.hanabank.com
회사연혁등	1971.06 한국투자금융(주) 설립 1991.07 은행으로 전환 2008.10 '2008 한국의 경영대상' 종합대상 수상(4년 연속)

나. 주요업무

(1) 주요업무

- 투자회사재산의 보관 및 관리
- 집합투자업자의 투자회사재산 운용지시에 따른 자산의 취득 및 처분의 이행
- 집합투자업자의 투자회사재산 운용지시에 따른 집합투자증권의 환매대금 및 이익금의 지급
- 집합투자업자의 투자회사재산 운용지시 등에 대한 감시
- 집합투자재산에서 발생하는 이자·배당·수익금·임대료 등의 수령
- 무상으로 발행되는 신주의 수령
- 투자증권의 상환금의 수입
- 여유자금 운용이자의 수입
- 금융감독위원회가 인정하여 고시하는 업무

(2) 신탁업자의 의무와 책임

(의무) ① 신탁업자 집합투자자를 위하여 법령, 정관, 투자설명서, 신탁계약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로서 그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합니다.

② 신탁업자는 집합투자업자의 운용지시가 법령, 정관 또는 투자설명서에 위반되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그 사항을 확인하고 위반이 있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업자에 대하여 당해 운용지시의 철회·변경 또는 시정을 요구하여야 합니다.

③ 신탁업자의 확인사항

▸ 투자설명서가 법령·정관에 부합하는지의 여부 / 집합투자재산의 평가가 공정한지의 여부 / 기준가격 산출이 적정한지의 여부 / 운용지시 시정요구 등에 대한 집합투자업자의 이행내역 / 투자회사재산별 자산배분내역 및 배분결과

(책임) 신탁업자가 법령, 정관 또는 투자설명서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투자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신탁업자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관련되는 이사 또는 감사(감사위원회 위원을 포함)에게도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집합투자업자는 이들과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연대책임)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판매회사, 일반사무관리회사 및 채권평가회사는 법에 의하여 집합투자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집니다.

4. 일반사무관리회사에 관한 사항

가. 회사의 개요

회 사 명	외환펀드서비스(주)
주 소 및 연 락 처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2가 181 (☎02-729-8402)
회 사 연 혁 등	2003. 4. 1. 설립 2003. 4. 30. 금융감독원 등록

나. 주요업무

(1) 주요업무

기준가격 계산에 관한 업무 및 보수인출 등의 업무를 수행합니다.

(2) 일반사무관리회사의 의무

기준가격 계산의 오류 및 집합투자업자와 맺은 계약의 불이행 등으로 인해 투자자에게 손실을 초래하는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5. 집합투자기구 평가회사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습니다.

6. 채권평가회사에 관한 사항

가. 회사의 개요

회 사 명	한국채권평가	KIS채권평가
주 소 및 연 락 처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211번지 ☎ 02-3215-1400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35-6 ☎ 02-399-3350
홈 페이지	www.koreabp.com	www.bond.co.kr
회 사 연 혁	2000년 설립	2000년 설립

나. 주요업무

채권시가평가 정보 제공, 채권 관련 자료 및 분석도구 제공,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채권 등 투자증권 및 파생상품의 가격을 평가하고 이를 이 투자회사의 집합투자업자 및 사무관리회사에 제공 등

1. 주주의 권리에 관한 사항

가. 주주총회

(1) 주주총회의 구성

이 투자회사에는 전체 주주로 구성되는 주주총회를 둡니다. 이 때, 특정 종류의 주식 주주에 대하여만 이해관계가 있는 때에는 그 종류의 주주로 구성되는 주주총회를 개최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의결권을 행사하거나 이익금 등을 받을 자 기타 주주 또는 질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자를 정하기 위하여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주주명부의 기재변경을 정지하거나 일정한 날에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 또는 질권자를 그 권리를 행사할 주주 또는 질권자로 볼 수 있습니다.

(2) 주주총회의 소집 및 의결권 행사방법

- 주주총회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회가 소집을 요청 하여 법인이사가 소집하며, 회사의 본점소재지에서 개최하되, 이사회 결의 가 있는 경우 기타 지역에서도 소집할 수 있습니다.
- 신탁업자 또는 발행된 주식총수의 100분의 5 이상을 보유한 주주가 주주총회의 목적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제출하여 주주총회의 소집 을 이사회에 요청하는 경우 이사회는 1월 이내에 주주총회를 소집하여야 합니다.
- 주주총회를 소집할 경우에는 주주총회일을 정하여 2주간 전에 각 주주에 대하여 회의의 목적사항을 기재한 통지서를 서면 또는 컴퓨터통신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다만, 그 통지가 주주명부상의 주소에 계속 3년간 도달하지 아니한 때에 회사는 당해 주주에게 주주총회의 소집을 통지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의결권은 주식 1개마다 1개로 합니다.
- 주주가 대리인으로 하여금 의결권을 행사하도록 하고자 하는 경우 그 대리인은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을 주주총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주주는 주주총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서면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3) 주주총회 결의사항

-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의 변경은 주주총회의 의결에 의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투자회사는 주주총회의 소집통지를 명의개서대리인에게 위탁하여야 합니다.

- ① 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 등이 받는 보수, 그 밖의 수수료의 인상
- ② 신탁업자의 변경(합병, 분할, 분할합병, 그 밖에 법 시행령 제216조로 정하는 사유로 변경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 ③ 정관으로 투자회사의 존속기간 또는 해산사유를 정한 경우 존속기간 또는 해산사유의 변경
- ④ 투자회사의 합병
- ⑤ 투자회사의 환매연기 발생시 후속 조치
- ⑥ 투자회사의 종류의 변경
- ⑦ 주된 투자 대상 자산의 변경,
- ⑧ 개방형투자회사의 환매금지투자회사로의 변경
- ⑨ 환매대금 지급일의 연장

- ⑩ 그 밖에 주주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4)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20

가

나. 잔여재산분배

- 이 투자회사의 주주는 결산에 따라 발생하는 결산분배금과 회사의 해산 또는 청산에 따라 발생하는 청산분배금에 대하여 그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신탁업자는 결산에 따른 결산분배금 또는 회사의 해산 또는 청산에 따라 발생하는 청산분배금을 집합투자업자의 지시에 따라 지체 없이 판매회사에게 인도합니다.
- 신탁업자가 결산분배금 또는 청산분배금 등을 판매회사에게 인도한 후에는 판매회사가 주주에 대하여 그 지급에 대한 책임을 부담합니다.
- 판매회사는 신탁업자로부터 인도받은 결산분배금 또는 청산분배금 등을 지체 없이 주주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청산일 현재 회사자산의 매각지연 등의 사유로 인하여 분배금 등의 지급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된 이후에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다. 장부·서류의 열람 및 등·초본 교부청구권

- 주주는 회사 및 판매회사에 대하여 영업시간 이내에 이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당해 투자회사투자자에 관련된 회사 재산에 관한 장부·서류의 열람이나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으며, 투자회사, 집합투자업자 및 판매회사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절할 수 없습니다.
- 전항의 규정에 의한 열람이나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청구의 대상이 되는 장부·서류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 투자회사·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판매회사 및 일반사무관리회사는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업무에 관한 장부 및 서류를 작성·비치하여야 합니다.

라. 손해배상책임

-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판매회사 법령, 정관 또는 투자설명서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주주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 집합투자업자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관련되는 이사 또는 감사(감사위원회의 위원을 포함합니다)에게도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이들과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 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판매회사·일반사무관리회사 및 채권평가회사는 법에 의하여 주주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집니다.
- 증권신고서(정정신고서 및 첨부서류를 포함)와 투자설명서(예비투자설명서 및 간이 투자설명서를 포함) 중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가 있거나 중요사항이 기재 또는 표시되지 아니함으로써 증권의 취득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해당 주체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다만 배상의 책임을 질 자가 상당

한 주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알 수 없었음을 증명하거나 그 증권의 취득자가 취득의 청약을 할 때에 그 사실을 안 경우에는 배상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 해당 증권신고서의 신고인과 신고당시의 발행인의 이사, 증권신고서의 작성을 지시하거나 집행한 자, 해당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 또는 그 첨부서류가 진실 또는 정확하다고 증명하여 서명한 공인회계사·감정인 또는 신용평가를 전문으로 하는 자 등, 해당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 또는 그 첨부서류에 자기의 평가·분석·확인·의견이 기재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고 그 기재내용을 확인한 자, 해당 증권의 인수계약을 체결한 자, 해당 투자설명서를 작성하거나 교부한 자, 매출의 방법에 의한 경우 매출신고 당시의 그 매출되는 증권의 소유자

마. 재판관할

-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또는 판매회사가 이 회사계약에 관하여 소송을 제기한 때에는 소송을 제기하는 자의 본점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 주주가 소송을 제기하는 때에는 주주의 선택에 따라 주주의 주소지 또는 주주가 거래하는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또는 판매회사의 영업점포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주주가 외국환거래법 제3조제1항제13호의 규정에 의한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주주가 거래하는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또는 판매회사의 영업점포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바. 기타 투자자의 권리보호에 관한 사항

- 이 상품의 정관 등 상품에 대한 추가정보를 원하시는 고객은 이 상품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판매회사에 언제든지 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이 상품의 기준가 변동 등 운용실적에 관해서는 이 상품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판매회사에 언제든지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이 상품의 투자설명서 및 기준가 변동 등은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람, 복사하거나, 금융투자협회 인터넷(www.kofia.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집합투자기구의 해지에 관한 사항

1)

- ① 존속기간의 만료 그 밖의 해산사유의 발생
- ② 주주총회의 결의
- ③ 피흡수합병
- ④ 파산
- ⑤ 법원의 명령 또는 판결
- ⑥ 투자회사 등록의 취소

2) 상기와 같이 가

30

- ① 해산의 사유 및 연월일
- ② 청산인 및 청산감독인의 성명·주민등록번호(청산인이 법인이사인 경우 상호·사업자등록번호)

3. 집합투자기구의 공시에 관한 사항

가. 정기보고서

(1) 영업보고서 및 결산서류 제출 등

[영업보고서]

투자회사는 집합투자재산에 관한 영업보고서를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다음의 서류로 구분하여 작성하고, 법 시행령 제9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작성하여 매 분기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이를 금융위원회 및 금융투자협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투자회사의 설정현황 또는 투자회사의 자본변동상황 / 투자회사재산의 운용현황과 투자회사 주식의 기준가격표 / 의결권공시대상법인에 대한 의결권의 행사여부 및 그 내용(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포함합니다)이 기재된 서류

[결산서류]

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이 투자회사 재산에 대한 결산서류를 작성하여 회계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고, 이 결산서류는 금융위원회 및 협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1) 집합투자기구의 회계기간 종료
- 2) 집합투자기구의 계약기간 또는 존속기간의 종료
- 3) 집합투자기구의 해지 또는 해산

(2) 자산운용보고서

- 집합투자업자는 자산운용보고서를 작성하여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아 3개월마다 1회 이상 당해 투자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자산운용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판매회사를 통하여 기준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직접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교부하여야 하나, 주주에게 전자우편 주소가 없는 등의 경우에는 법 제89조 제2항 제1호 및 제3호의 방법에 따라 공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주주가 우편발송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합니다.

- 자산운용보고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 ① 회계기간의 개시일부터 3개월이 종료되는 날, 회계기간의 말일, 계약기간의 종료일 또는 존속기간의 만료일, 해지일 또는 해산일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 현재의 해당 집합투자기구의 자산·부채 및 집합투자증권의 기준가격
- ② 직전의 기준일(직전의 기준일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집합투자기구의 최초설정일 또는 성립일)부터 해당 기준일까지의 기간 중 운용경과의 개요 및 해당 운용기간 중의 손익사항
- ③ 기준일 현재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자산의 종류별 평가액과 집합투자재산 총액에 대한 각각의 비율
- ④ 해당 운용기간 중 매매한 주식의 총수, 매매금액 및 해당 운용기간 중 매도한 주식가액의 총액을 그 해당 운용기간 중 봉한 주식의 평균가액으로 나눈 비율인 매매회전을
- ⑤ 그 밖에 법시행령 제92조제3항에서 정하는 사항

- 투자자가 수시로 변동되는 등 아래의 경우에는 자산운용보고서를 투자자에게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1) 투자자가 자산운용보고서의 수령을 거부한다는 의사를 서면으로 표시한 경우
- (2)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를 설정 또는 설립하여 운용하는 경우로서 매월 1회이상 집합투자업자, 판매회사, 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시하는 방법으로 자산운용보고서를 공시하는 경우
- (3) 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를 설정 또는 설립하여 운용하는 경우로서 3개월마다 1회 이상 집합투자업자, 판매회사, 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시하는 방법으로 자산운용보고서를 공시하는 경우

(3) 자산보관·관리보고서

신탁업자는 집합투자기구의 회계기간 종료, 집합투자기구의 계약기간 또는 존속기간의 종료 등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다음 사항이 기재된 자산보관·관리보고서를 작성하여 주주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주주에게 전자우편 주소가 없는 등의 경우에는 법 제89조 제2항 제1호 및 제3호의 방법에 따라 공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주주가 우편발송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합니다.

- 1) 집합투자계약의 주요 변경사항
- 2) 투자운용인력의 변경
- 3) 집합투자자총회의 결의내용 등

(4) 기타 장부 및 서류

가

나. 수시공시

(1) 정관변경에 관한 공시

투자회사는 정관을 변경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공시하여야 합니다.

- 주주총회의 의결에 의하여 정관을 변경한 경우: 명의개서 대행기관을 통한 주주에의 통지
- 주주총회의 의결에 의하지 않고 정관을 변경한 경우: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한 공시

그 외 정관의 단순한 자구수정 등 경미한 사항을 변경한 경우 그 내용을 집합투자업자 및 판매회사의 영업점포 내에 1개월 이상 게시하여야 합니다.

(2) 수시공시

투자회사가 주주에 대하여 일간신문에 광고를 하는 때에는 서울경제신문에 광고하되, 2 이상의 일간신문에 광고하는 때에는 헤럴드경제신문에도 광고합니다.

집합투자업자는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행한 경우 지체없이 집합투자업자 (www.midasasset.com)·판매회사 및 한국금융투자협회(www.kofia.or.kr)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고, 집합투자업자·판매회사의 본·지점 및 영업소에 게시하며, 판매회사로 하여금 전자우편을 이용하여 수익자에게 알리게 하여야 합니다.

* 운용전문인력의 변경 /환매연기 또는 환매재개의 결정 및 그 사유 / 법령이 정하는 부실자산이 발생한 경우 그 내역 및 상각율 / 주주총회의 의결내용 / 정관 또는 투자설명서의 변경. (단, 법령의 개정 또는 금융감독원장의 명령에 따라 정관을 변경하거나, 단순한 자구수정 등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 / 집합투자업자의 합병, 분할 또는 영업의 양도양수 / 기준가격을 잘못 계산하여 이를 수정하는 경우 그 내용(법 시행령 제 262조 제1항 후단에 따라 공고, 게시하는 경우에 한한다) 등의 법령이 정하는 사항

(3) 집합투자재산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공시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인 주식의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의결권행사내용 등을 공시하여야 합니다.

의결권행사에 관한 공시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합니다.

- 의결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주권상장법인인 경우에는 주주총회일 5일전까지 증권시장을 통하여 의결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내용을 공시할 것
- 의결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주권상장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법시행령제93조제1항각호

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공시하여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할 것

4. 이해관계인 등과의 거래에 관한 사항

가. 이해관계인과의 거래내역

해당사항 없음

나. 집합투자기구간 거래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

다. 투자중개업자 선정 기준

가. 투자증권거래

구분	중개회사 선정기준
주식	1. 평가방법 매월 각 위탁매매 대상 중개회사를 평가하여 점수화한 후 순위별로 위탁매매 배정
	2. 평가주체 : 주식운용역, 애널리스트
	3. 평가항목 애널리스트의 정보제공, 탐장주선, 세미나 주최 등 당사 운용수익률 제고에 도움이 되는 지원 활동
채권 등	1. 평가방법 매 분기 중개회사에 대해 선정된 항목에 따라 정성 평가하고, 전체 점수를 합산하여 중개회사의 순위 결정/ 각 중개회사별 점수를 기준으로 위탁 매매 배정
	2. 평가주체 : 채권운용역
	3. 평가항목 시장상황 및 호가의 정확성, 거래체결 빈도, Research 자료제공 여부, Back Office 업무처리 능력

나. 장내파생상품거래

구분	중개회사 선정기준
주식 관련	1. 평가방법 매월 각 위탁매매 대상 중개회사를 평가하여 점수화한 후 순위별로 위탁매매 배정
	2. 평가주체 : 주식운용역
	3. 평가항목 시황관련 정보제공 등 운용수익률 제고에 도움이 되는 지원활동과 매매체결의 신속/정확성
채권 관련등	1. 평가방법 매분기 중개회사에 대해 선정된 항목에 따라 정성 평가하고, 전체 점수를 합산하여 중개회사의 순위 결정/ 각 중개회사별 점수를 기준으로 위탁 매매 배정
	2. 평가주체 : 채권운용역

3. 평가항목

시장상황 및 호가의 정확성, 거래체결 빈도, Research 자료제공 여부, Back Office 업무처리 능력

5. 외국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추가 기재사항

해당사항 없음

제6부 첨부서류에 관한 사항

[집합투자증권신고서 제출시 첨부서류]

1. 집합투자규약(부속서류를 포함)
2.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그 설립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출자금의 납입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4. 다음 각 목의 자와 체결한 업무위탁계약서(부속서류 포함)의 사본
 - 가. 집합투자업자
 - 나. 신탁업자
 - 다. 일반사무관리회사
5.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와 판매계약 또는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계약서(부속서류 포함)의 사본:

(http://www.midasasset.co.kr/company/com03_07.aspx)
6. 간이투자설명서
7. 투자회사의 경우 감독이사의 이력서 및 결격요건에 해당하지 않음을 증빙하는 서류

[]

용 어	내 용
집합투자업자	2 인 이상에게 투자권유를 하여 모은 금전 등을 받아 증권(주식, 채권 등)등에 투자·운용하는 회사를 말합니다.
신탁업자	투자재산을 보관·관리하는 회사를 말합니다.
금융투자협회 펀드코드	상장주식의 경우 회사명 또는 코드번호 6 자리를 활용하여 투자자들이 쉽게 공시사항을 조회, 활용할 수 있는 것처럼 펀드 또한 금융투자협회가 부여하는 5 자리의 고유 코드가 존재하며, 펀드명 뿐만 아니라 이러한 코드를 이용하여 펀드의 각종 정보에 대한 조회가 가능합니다.
개방형(집합투자기구)	투자자가 원할 시 언제든지 환매가 가능한 펀드입니다.
폐쇄형(집합투자기구)	환매가 불가능한 펀드입니다.
추가형(집합투자기구)	기 설정된 펀드에 추가 설정이 가능한 펀드입니다.
단위형(집합투자기구)	투자회사의 모집시기(판매기간)이 한정되어 있고 그 이후에는 가입할 수 없는 펀드입니다.
종류형(집합투자기구)	통상 멀티클래스펀드로 불리웁니다. 멀티클래스 펀드란 하나의 펀드 안에서 투자자 그룹(클래스)별로 서로 다른 판매보수와 수수료 체계를 적용하는 상품을 말합니다. 보수와 수수료의 차이로 클래스별 기준가격은 다르게 산출되지만 각 클래스는 하나의 펀드로 간주돼 통합 운용되므로 자산운용 및 평가 방법은 동일합니다.
증권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재산의 50% 이상을 증권(주식, 채권 등)에 투자하는 펀드입니다.
부동산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재산의 50% 이상을 부동산(부동산과 관련된 증권 등 포함)에 투자하는 펀드입니다.
금리스왵	금리스왵은 금리상품의 가격변동으로 인한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금융 기관끼리 고정금리와 변동금리를 일정기간동안 상호교환하기로 약정하는 거래를 말합니다. 이때 원금은 바꾸지 않고 서로 이자지급 의무만을 바꾸며, 금리스왵은 보통 금리상승에 따른 위험을 줄이기 위해 주로 활용됩니다
기준가격	펀드의 매입·환매 및 분배시 적용되는 가격으로, 기준가격의 산정은 전일의 펀드 순자산총액을 전일의 펀드 잔존 수익증권 수량으로 나누어 1,000 을 곱한 가격으로 표시하고,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합니다
레버리지효과	파생상품을 이용한 고위험의 투자방법으로 적은 투자금액으로 큰 수익을 얻을 기회를 제공하기도 하지만, 주가가 예상과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면 큰 손실을 초래하기도 합니다.
신탁보수	투자회사의 운용 및 관리와 관련된 비용입니다. 다시 말해 재산을 운용 및 관리해준 대가로 고객이 지불하는 비용입니다. 이는 통상 연율로 표시되며, 신탁보수에는 운용 보수, 판매보수, 수탁보수 등이 있습니다. 보수율은 상품마다 다르게 책정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선물환거래	장래의 일정기일 또는 일정기간 내에 일정액의 외국통화를 일정한 환율로 매매할 것을 미리 약속하는 거래로 환헤지의 수단으로 자주 이용됩니다.

성과보수	현행 법은 불특정다수의 일반 투자자를 대상으로 판매하는 펀드(공모펀드)의 경우 집합투자업자가 펀드의 성과에 따라 추가적 보수(성과보수)를 수취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소수의 투자자를 대상으로 하는 사모펀드 혹은 투자일임계약의 경우 약관(계약)에 따라 성과보수의 수취가 가능합니다. 펀드매니저가 성과보수가 있는 사모펀드, 투자일임계약과 성과보수가 없는 공모펀드를 함께 운용함에 따라 성과보수가 있는 펀드 등의 투자수익을 높이기 위해 더 많은 투자노력을 기울이는 등 이해상충발생소지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투자자총회	수익증권 총수의 100 분의 5 이상을 보유한 투자자가 소집을 요청하는 경우 1 개월 이내에 집합투자업자가 소집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총 수익증권 수의 과반수를 보유하는 투자자의 출석으로 열리는데, 상정된 안건은 출석한 투자자 <u>의결권</u> 의 3 분의 2 이상과 수익증권 총수의 3 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됩니다. 만약 이 의결에 반대하는 투자자는 총회가 개최되기 전에 서면으로 반대의사를 통지하고 20 일 이내에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수익증권	증권거래법상 유가증권의 일종으로 집합투자업자가 일반 대중으로부터 자금을 모아 펀드를 만들 때 이 펀드에 투자한 투자자들에게 출자비율에 따라 나눠주는 권리증서를 말합니다. 투자회사에 가입(매입)한다는 것은 이 수익증권을 산다는 의미입니다
수탁고	펀드에 유치된 자금의 양, 즉 집합투자업자가 고객들의 자금을 맡아 운용하는 규모를 지칭합니다.
신주인수권부사채	사채권자에게 사채 발행 이후에 기재회사가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미리 약정된 가격에 따라 일정한 수의 신주 인수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사채입니다.
실물자산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임산물, 광산물, 에너지 등에 속하는 물품 및 이 물품을 원료로 하여 제조하거나 가공한 물품 등을 의미합니다.
원천징수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할 때, 그 지급자가 그 지급받는 자가 부담할 세액을 미리 국가를 대신하여 징수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근로자가 월급을 받을 때 월급(소득)에서 발생하는 세금을 차감한 금액을 받게 됩니다. 이는 월급을 지급하는 회사가 국가를 대신해서 미리 세금을 징수하고 세금 납입일(통상 매달 10 일)에 일괄적으로 국가에 납부하기 때문입니다
자산유동화증권	자산유동화증권이란 기업의 부동산을 비롯한 여러가지 형태의 자산을 담보로 발행된 채권을 말하며, 기업의 입장에서는 유동성이 떨어지는 부실채권이나 직접 매각하기 어려운 부동산 등 담보로 맡기고 ABS 를 발행해 쪼개서 판매함으로써, 자금 조달의 용이성을 제고할 수 있습니다.
전환사채	특수사채의 일종으로, 사채로 발행되나 일정 기간 이후에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지는 사채를 말합니다.
주식워런트	주식워런트는 특정 주식을 미리 정한 가격에 살 수 있는 권리증서로, 만기에 특정종목의 주가나 주가지수를 미리 정한 가격에 사고 팔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상품으로 옵션과 유사합니다. 살 수 있는 상품은 '콜워런트', 팔 수 있는 상품은 '풋 워런트'입니다.
판매수수료	투자자가 펀드 매입 시, 판매회사에 일회적으로 지불하는 수수료입니다. 이는 상품에 대한 취득 권유 및 설명, 투자설명서 제공 등에 수반되는 비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수수료 지불 시점에 따라 선취판매수수료와 후취판매수수료로 구분합니다.

설정	정관에 의거, 신탁업자와 신탁계약을 체결한 후 일정단위의 신탁금을 신탁업자에 납입하는 것을 설정이라고 하며, 신규설정과 추가설정이 있습니다.
해지	투자회사(펀드)의 신탁기간이 종료되거나, 스팟펀드처럼 약속한 수익률에 도달할 경우 펀드의 자산을 모두 처분, 투자자들에게 원금과 수익금을 나눠주는 법적 절차를 말합니다.
환매	만기가 되기 전에 맡긴 돈을 되찾아 가는 것을 환매라고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가 채택하고 있는 투신제도상 고객이 중도인출을 요구할 경우 투신사가 이를 받아들여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단위형(폐쇄형) 상품의 경우 일정기한까지 중도해약을 금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환매수수료	계약 기간 이전 중도에 펀드를 환매할 시 일정한 벌칙금 형식으로 투자자에게 일회적으로 부과하는 수수료입니다. 이는 펀드 운용의 안정성과 펀드 환매 시 소요되는 여러 비용을 감안하여 책정되며 부과된 수수료는 다시 펀드 재산에 편입되게 됩니다.
환매조건부채권	금융기관이 일정 기간 후 확정금리를 보태어 되사는 조건으로 발행하는 채권을 말합니다.
환헤지	해외펀드는 대부분 달러로 주식을 사들이기 때문에 도중에 환율이 떨어지면 환차손(환율 변동에 따른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외에 투자하는 펀드들은 선물환 계약(미리 정해놓은 환율을 만기 때 적용하는 것) 등을 이용하여 환율 변동에 따른 손실 위험을 제거하는 환헤지 전략을 구사하기도 합니다.

